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된 최저세율로 적용하고,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규정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시세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현재 6단계(0.3~7%) 누진세율로 적용하던 것을 최저세율인 0.3%로 적용.(안제12조의2)
-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 감면함.
(안제24조의2)

□ 검토의견

법령 적합성

- 동 개정 조례안중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 사항으로 나와 있는 바, 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허가를 한 사항으로 법령상 적합하다고 생각됨

-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으로 법령상 적합하다고 생각됨

내용적 타당성

- IMF체제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시세인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됨